

[본조신설 2020. 12. 23.]

**제13조의10(재정지원 대상사업)** 법 제21조의7제5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12. 23.>

1. 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
2. 물류창고 시설 · 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
3.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· 훈련
4. 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 · 연구

[본조신설 2012. 2. 15.]

[제13조의5에서 이동 <2020. 12. 23.>]

**제13조의10(재정지원 대상사업)** 법 제21조의7제5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12. 23., 2025. 3. 28.>

1. 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
2. 물류창고 시설 · 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
3.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· 훈련
4. 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 · 연구
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2. 2. 15.]

[제13조의5에서 이동 <2020. 12. 23.>]

[시행일: 2026. 3. 29.] 제13조의10

**제13조의11(준용규정)**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 ·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사업승계 신고, 휴업 · 폐업 신고, 해산 신고(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만 해당한다) 및 등록취소 ·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0. 12. 23., 2022. 8. 24.>

[본조신설 2012. 2. 15.]

[제13조의6에서 이동 <2020. 12. 23.>]

## 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<신설 2022. 8. 24.>

**제14조(물류단지지정대장 등)**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(이하 "물류단지지정권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 · 비치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(이하 "시행자"라 한다)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6. 30., 2022. 8. 24.>

1.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
2.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
3.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

**제15조(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)**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6. 6. 30.>

[제목개정 2016. 6. 30.]

**제15조의2(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)**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, 동의철회서 또는 대표자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2호의2서식, 제12호의3서식 또는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.